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11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이해식 · 김영진 · 한민수
이상식 · 윤준병 · 박상혁
박용갑 · 허 영 · 서영석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관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물 수집·보전·활용 등의 공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은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기록물의 이관 방식에 대한 특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복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조정함(안 제9조제1항).
- 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등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원 및 보존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 다. 기록관 등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 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심의 사항 중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9항 및 제10항).
- 마. 전자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많고 식견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간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7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으로, “운영할”을 “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조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원, 보존(보존을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기록물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준기록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준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위원회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에서”를 “제10항까지에서”로 한다.

⑨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사항 중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존기간”을 “보존기간·방법·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을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로서”를 “와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화기록물”이라 한다)로서”로,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수기록관”을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서 등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많고 식견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9. (생략)</p> <p><신설></p> <p>10. (생략)</p> <p>③ (생략)</p> <p>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신설></p>	<p>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조정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p> <p>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p>

공공기관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원, 보존(보존을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준기록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준기록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

- 1. ~ 6. (생략)
-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1. ~ 6. (현행과 같음)
- 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 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사항 중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⑪ -----제10항까지에서 -----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보존기간
· 방법 · 장소,-----

-----.

② -----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
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야 한다.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
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
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
자기록물”이라 한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
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
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
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
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
을 이관할 수 있다.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 . <단서
삭제>

③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
기록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④ -----

-----와 전자기
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이
하 “전자화기록물”이라 한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
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

⑤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

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

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